

파 주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| | |
|---|---------|
| 선 | 기 관 의 장 |
| 람 | |

제1730호

2019년 7월 15일 (월)

차 례

입법예고

- 파주시 공고 제2019-1160호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

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관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발행 : 파주시

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15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
2. 개정이유

-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전통시장 보조금 정산기간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에 대한 무상위탁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신설 (안 제7조의2)
- 나.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 (안 제22조의2)
- 다.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제출기간을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37조의3에 따라 2개월 이내로 변경 (안 제23조제4항)
- 라.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신설 (안 제28조의2)
- 마.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에 대한 무상위탁 규정 신설(안 제32조제2항)
- 바. 사용·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 신설 (안 제35조의2)
- 사.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절차 신설 (안 제40조)

4. 자치법규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19년 8월 4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FAX 등

-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‘입법예고’에 전문 게시

- 자치법규정보시스템(<http://www.elis.go.kr>) ‘입법예고’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

다. 기재내용 : 주소·성명·생년월일·연락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지역공동체과 지역경제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지역공동체과(우 10932)

○ 전화 : 031-940-4521 / FAX 031-940-4559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- 성명(단체명) :
 - 주 소 :
 - 생 년 월 일 :
 - 전 화 번 호 :

| 개정안 내용 | 의 건 | 비 고 |
|--------|-----|-----|
| | | |